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 범위에 교제폭력범죄 추가 등〉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74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교제폭력 처벌에 대한 입법논의	3
2. 교제폭력범죄를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 에 추가	8
3.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시 집행 절차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28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의 부착과 보호관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유사하지만,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 미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 뿐 아니라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하여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제폭력을 근절하고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나.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73호)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55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교제폭력 처벌에 대한 입법논의

○ 최근 강남역 교제살인 사건, 거제 교제폭력 사망사건 등 현재 또는 과거 연인관계에서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교제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 발생하는 단순한 애정문제가 아닌 중대범죄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조기에 공권력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¹⁾

<교제폭력 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신고 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폭행·상해	체포·감금 ·협박	성폭력	기타	계		
2020	49,225	6,416	898	51	1,586	8,951	212	8,739
2021	57,305	7,507	1,000	145	1,886	10,538	216	10,322
2022	70,790	9,068	1,154	274	2,332	12,828	214	12,614
2023	77,150	9,430	1,258	453	2,780	13,921	300	13,621
2023.10.	64,875	7,892	1,048	359	2,290	11,589	261	11,328
2024.10.	72,276	8,119	1,183	405	2,403	12,110	236	11,874

자료 : ‘치안전망 2025’, 치안정책연구소, 2024. 12., p.153

○ 그러나 교제폭력은 법률상 용어가 아닌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

1)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24. 9. p.8.

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하는 개념²⁾으로서 현재까지 이에 대한 법적 정의 등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행법상 범죄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죄 등의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³⁾

○ 교제폭력은 행위 태양에 있어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범죄와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 등으로 일반적 범죄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교제폭력에 대한 입법방식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①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기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 범위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방안, ② 교제폭력만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 ③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제폭력의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⁴⁾.

2) 신보라,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9. p.4.

3)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24. 9. p.4.

이와 관련하여 교제폭력에 관한 별도의 특례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45호),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01호,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73호),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을 정의하고 해당 폭력 범죄에 강압적 통제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584호), 가정폭력 정의에 ‘강압적 통제행위’를 포함하고 ‘친밀한 관계 폭력’을 별도로 정의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685호), ‘교제폭력행위’와 ‘교제폭력범죄’를 정의하며 스토킹 행위·범죄에 적용되는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⁵⁾를

4)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24. 7. p.13.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교제폭력행위·범죄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572호)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며, 각 법률안들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교제폭력’관련 법률안의 전자장치 부착 관련 내용〉

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 관련 내용	연계 전자장치 부착법 발의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미애의원, 의안번호 제2201445호)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포함 (안 제12조제1항제4호) 전자장치 부착 집행시 전자장치부착법 제5장의2 준용(안 제13조제5항)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정현의원, 의안번호 제2207401호)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포함 (안 제11조제1항제5호) 전자장치 부착 집행시 전자장치부착법 제5장의2 준용(안 제12조제5항)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황정아의원, 의안번호 제2207473호)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미포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의안번호 제2201584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의안번호 제2201685호)	임시조치 ⁶⁾ 에 전자장치 부착 미포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의안번호 제2205572호)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포함 (안 제8조제2항제3호의2) 전자장치 부착 집행시 전자장치부착법 제5장의2 준용(안 제10조제5항)	○

1.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

○ 교제폭력범죄를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대상인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법원이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한 집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심사를 위해서는 교제폭력행위와 교제폭력범죄의 법제화 및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할지 여부가 ‘교제폭력’ 관련 법률안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제폭력’ 관련 법률안의 심의경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보이며,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02호)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 심사할 필요가 있음.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2. 교제폭력범죄를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 관찰 대상에 추가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u>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u> 를 말한다. 2. ~ 3의4. (생략) <u><신설></u> 4. (생략)	제2조(정의) ----- -----. 1. ----- ----- <u>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u> -----. 2. ~ 3의4. (현행과 같음) <u>3의5. “교제폭력범죄”란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죄를 말한다.</u> 4. (현행과 같음)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⑤ (생략) <u><신설></u>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교제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u> <u>1. 교제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u> <u>2. 교제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때</u> <u>3. 교제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u>
<u>⑥</u> · <u>⑦</u> (생략)	<u>⑦</u> · <u>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작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작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생략)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⑨ -----제6항까지의----- ----- ----- -----.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 -----. 1. (현행과 같음) 2. 스토킹범죄 또는 교제폭력범죄를----- -----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교제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교제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현 행	개정안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 ----- -----. 제21조의8(준용규정) ----- -----제5조제7항·제9항----- ----- ----- ----- ----- ----- ----- ----- -----.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⁷⁾로 정의하며, 특정범죄를 범한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과거 범죄 전력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또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괴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⁹⁾하고 있음.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행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행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톱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톱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톱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서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 법률은 ‘교제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교제폭력행위’로 정의하며, 교제폭력범죄를 ‘교제폭력행위’로서 「형법」에 규정된 상해, 폭행, 체포, 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명예에 관한 죄 등 중 일부에 해당하는 죄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연계된 ‘교제폭력’관련 법률안의 교제폭력행위의 정의 등>

구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의안번호 제2105572호)
교제폭력 행위의 정의	교제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교제폭력 범죄의 정의	교제폭력행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형법」 제2편제25장 <u>상해와 폭행의 죄</u> 중 제257조제1항·제3항, 제258조제1항·제2항, 제258조의2(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2조(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 및 제264조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9장 <u>체포와 감금의 죄</u> 중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78조(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79조(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80조(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1조제1항(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편제30장 <u>협박의 죄</u> 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제283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2장 <u>강간과 추행의 죄</u>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2조 및 제305조의2(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및 제302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3장 <u>명예에 관한 죄</u> 중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1조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7장 <u>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u> 중 제324조 및 제324조의5(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개정안은 이러한 교제폭력범죄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 범죄인 특정범죄에 포함하여 교제폭력범죄자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며, 이에 따른 각각의 의무적 준수사항 부과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교제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연인관계의 특수성으로 다른 일반 범죄보다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밖에 없어 경미한 수준에서 시작하였더라도 보복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교제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와 같이 형 집행 후 전자장치 부착 또는 보호관찰 명령 대상인 특정범죄에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첫째,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은 재범의 위험성 또는 적용대상 범죄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부과하는데, 범죄분류별 재범현황을 살펴볼 때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범죄와 비교하여 교제폭력범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중 일부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명백하지 않으며,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 법률에 따른 교제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각각의 범죄들은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에 비해 행위태양 및 죄질에 있어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범죄 분류별 재범 현황(2023년 기준)>

범죄 종류	범죄자 수(A)	전과 있음(B)	전과 없음	미상	재범률 (B/A)
살인	835	427	209	199	51.1%
강도	958	493	262	203	51.5%
성폭력	37,394	12,797	14,115	10,482	34.2%
약취와유인 ¹⁰⁾	434	147	96	191	33.9%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 범죄	11,501	5,688	2,949	2,864	49.5%
폭행	158,999	69,740	34,273	54,986	43.9%
상해	32,817	20,311	9,227	3,279	61.9%
체포와감금	2,033	762	405	866	37.5%
협박	24,747	12,083	5,336	7,328	48.8%
명예	35,918	8,308	6,086	21,524	23.1%
권리행사방해	6,195	1,560	631	4,004	25.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범죄	1,242	881	198	163	70.9%

자료 : 대검찰청(2024 범죄분석)

10) 2023년 약취유인범죄의 58.5%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였으며,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의 41.9%가 검거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과자로 나타남.

둘째, 교제폭력범죄와 행위객체만이 다를 뿐¹¹⁾ 범죄구성요건이 유사한 가정폭력범죄¹²⁾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의 대상이 아니므로 가정폭력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교제폭력범죄를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 11) 가해자와 피해자의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제폭력은 관계성 범죄라는 점에서 가정폭력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가정폭력과는 행위객체 면에서 교제폭력이 애정을 기반으로 한 “연인 관계”가 대상임에 반해 가정폭력은 그 대상이 법률상 혼인 또는 사실혼 등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거나 했었던 “가정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 1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학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아.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할 것으로 보임.

셋째, 교제폭력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잠정조치로서의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서의 전자장치 부착과 재범 위험성 방지를 위한 교제폭력범죄자의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은 성격이 다른 제도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서의 전자장치 부착의 도입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시 집행 절차

현 행	개정안
제5장의2 <u>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u>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이하 이 장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u>스토킹행위자의 사건</u>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과 <u>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u> 를 관할하는 <u>보호관찰소</u> (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u>스토킹행위자</u> 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u>스토킹행위자</u> 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스톱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의2 <u>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u>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 또는 제9조제2항제3호의2에----- ----- ----- ----- <u>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u> ----- ----- ----- <u>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u> ----- ----- ----- ----- ----- ② ----- <u>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u> ----- ----- ----- ----- ----- ----- ----- ----- ③ ----- <u>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가</u> ----- ----- -----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u>여부 또는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교제폭력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u> ----- ----- ----- ----- ----- 1. ~ 6. (생략)

현행	개정안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u>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u> 1. (생략) 2. <u>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u> 3. <u>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u> 4. (생략) ⑤ <u>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⑥ ~ ⑧ (생략) 제31조의8(<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u>스토킹행위자</u>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④ -----<u>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u>----- ----- -----. 1. (현행과 같음) 2.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9조제2항제2호를</u>----- ----- 3.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을</u>----- ----- 4. (현행과 같음) ⑤ ----- -----<u>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u>----- ----- -----<u>「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9조제2항제4호에</u>-----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의8(<u>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u>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 -----<u>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u>----- ----- -----<u>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u>----- ----- -----. ② <u>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u> ----- -----

현행	개정안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4. (생략) ③ (생략)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u>스토킹범죄사건</u>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3. (생략) 제36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수신자료(<u>스토킹행위자</u>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가 제16조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u>혐의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제폭력범죄혐의</u>----- ----- 2. 「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3호의2----- ----- 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u>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u>----- -----. 1. (현행과 같음) 2. -----<u>스토킹범죄사건 또는 교제폭력범죄사건</u>----- ----- ----- 3. (현행과 같음) 제36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스토킹행위자 및 교제폭력행위자</u>----- ----- -----.

-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시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톱킹행위자에게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 「전자장치부착법」 제5장의2(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8까지)는 이러한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
- 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톱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톱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톱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톱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톱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톱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톱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경우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개정안과 연계된 ‘교제폭력’ 관련 법률에서 교제폭력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규정¹⁴⁾함에 따라 그 집행을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제5장의2에 ‘교제폭력’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한 이유는 잠정조치 중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였으므로,

‘교제폭력’ 관련 법률에서 교제폭력행위자의 잠정조치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조치를 규정할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함께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의 집행을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전자장치부착법」에 관련 사항을 규정해야 함.

- 다만,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05572호) 제9조(잠정조치) ② 법원은 교제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교제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교제폭력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및 제2항의 각 잠정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의안번호 제2122784호¹⁵⁾)의 심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견이 있었음을 개정안의 논의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법원행정처 등 반대의견은 1회의 스토킹행위만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사생활 침해 등 과도한 기본권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될 소지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¹⁶⁾.

문 의 처
02-6788-5075

15) 대안의 주요 내용은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안 제9조 제1항제3호의2·제3항·제4항 및 제5항 신설)하는 것으로,

- 1)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2)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3)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6) ‘제40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3, p15.~17.